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목차	2
공중위생업 시설기준 - 건물위생관리업	3
건물위생관리업	3
시설기준	3
영업자 준수사항	3

공중위생업 시설기준

식품위생업 시설기준

위생업소현황

· 목욕장업 · 이용업 · 미용업 · 숙박업 · 세탁업 · **건물위생관리업**

건물위생관리업

⊙ 시설기준

-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.
- 진공청소기(집수 및 집진용)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.
-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·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.
- 먼지, 일산화탄소,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(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구획(칸막이·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되어야 한다.
- 예외 :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경우로서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, 그 밖에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⊙ 영업자 준수사항

-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,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GANGJIN

Web Contents

